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1,

공중
인가 한일합동

(전화) 02-752-

[별지 제33호서식]

(팩스) 02-755-

등부 2017년 제 3968 호

인 증 서

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 건 건물을 책임 준공할 것이며, 증액된 공사대금을 여신회사의 본건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된 이후에 지급받을 것입니다.

(4) 시공사는 대출약정서의 내용을 모두 승인하며, 여신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공사도급 계약 기타 사업계약을 변경, 해지,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여신회사의 대출원리금상환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법령 및 계약의 준수

시공사는 본 건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공사도급계약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제반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입니다.

4. 피용자 및 하도급 등에 대한 책임

시공사는 본건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에 투입되는 (i) 시공사의 피고용인과 하도급 업체의 선임, 감독, (ii) 피고용인과의 노사분쟁, (iii) 하도급업체와의 분쟁 및 (iv) 건설장비 등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5. 효력발생

본 확약서는 본 확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약정상 여신회사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동 확약서 상의 권리와 지위를 동일하게 승계하여 보유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인합니다.

2017년 8 월 일

확약인

주식회사 인터반종합건설
대표이사 문정호 (인)

문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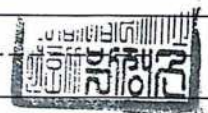
[별지 제35호서식]

등부 2017 년 제 3968호

인 증

위 책임준공확약서 ----- 에 기재된

주식회사 인터 설 사내이사 문 의 대리인 김: 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서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2017년 09월 05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
인가 **한일합동**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